##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14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전용기·박홍배·민병덕

신정훈 • 전진숙 • 장철민

박용갑・임호선・윤종군

박지원 · 송옥주 · 김현정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지위나 업무의 성격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현행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연히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고,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함. 따라서 헌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둔 국회나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동일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렇게 규정해야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직무감찰과 관련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함. 이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려는 것임(제24조제3항 개정).

법률 제 호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에"를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감찰 사항) ①・② (생	제24조(감찰 사항)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	③		
법원 및 <u>헌법재판소에</u> 소속한	<u>헌법재판소·선거관리</u>		
공무원은 제외한다.	<u>위원회에</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